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63호
------	-------

제출연월일 : 2023. 01.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1. 개정이유

농림축산국 소속 위원회 중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일부 조문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 명칭 및 기능조정(안 제1조)
- 나. 충청남도 우리밀육성위원회 대행 규정 신설(안 제2조)
- 다. 충청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 신설(안 제3조~제5조)

## 3. 참고사항

- 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다.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
- 라.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2. 12. 12. ~ 2023. 1. 2.)

- 마.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2. 12. 26., 여성가족정책관)
-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12. 19., 감사위원회)
-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12. 16., 교육법무담당관)
- 아. 비용추계서 : 비대상(2022. 12. 16., 예산담당관)
- 자. 인권영향평가 : 개선권고 수용(2022. 12. 27., 자치행정과)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3농정책위원회”를 “충청남도 농정위원회”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설치)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농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적 농정거버  
넌스를 통해 지방농정의 역량을 강화하여 농정의 성과를 제고하고  
지역의 농업·농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충청남도 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 명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조정·심의한다.

1. 농업의 공익적 가치실현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3. 농업·농촌분야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에 관한 사항
4. 농업·농촌 정책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5. 각 분과별 제안 사항에 대한 종합조정

6. 농업농촌 분야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대행

7.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농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동위원장은 도지사나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림축산국장, 농업기술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농업인단체 및 주요 품목별 생산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

3. 소비자단체 대표 및 전문 경영인

4. 농업·농촌 관련분야의 전문가

5. 농업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중전의 제16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의 개발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회의”를 “위원회”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9조(중전의 제17조) 제1항 중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호선에 의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장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농정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3조(「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회의는 동 조례의 목적과 관련한 사항이 필요할 경우 개최한다.

### 제4조(「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가” 를 “농림축산국장이” 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국장, 농업기술원장” 을

“농림축산국 담당과장, 농업기술원 친환경 담당 과장” 으로,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 부분부장” 을 “농협경제지주 충남지역본부 단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를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친환경농업 관련 교수 또는 연구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5조(「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담당과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시·군 가축방역업무 소관 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의 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도본부장,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축산 관련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4조제4항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3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 를 “비상설로 둔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회는 심의회 위원장 및 심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심의·의결 후 협의회는 자동해산한다.

제19조의4 전단 중 “제5항까지, 제15조” 를 “제5항까지”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1.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현행	개정안	사유
<p>제4장 <u>3농정책위원회</u></p> <p>제13조(설치) <u>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가 소득안정, 농어촌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 등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 및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제14조(기능)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조정·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지역농정과 관련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및 자문</u></li> <li><u>2.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충청남도 3농정책</u></li> </ol>	<p>제4장 <u>충청남도 농정위원회</u></p> <p>제13조(설치) <u>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농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적 농정거버넌스를 통해 지방농정의 역량을 강화하여 농정의 성과를 제고하고 지역의 농업·농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 명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14조(기능)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조정·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농업의 공익적 가치실현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u></li> <li><u>2.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u></li> </ol>	<p>충남농정위원회로 조정</p> <p>협의체의 설치목적은 농업·농촌 그리고 농업인으로 한정</p> <p>위원회의 기능조정</p>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조정

3. 농수산분야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에 대한 자문·조정·심의 결정, 농수산분야 벤처농업 육성 예산 운영, 3농정책운영위원회 구성

4. 지역 농특산물 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지원 등 자문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자문 및 조정

3. 농업·농촌 분야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농정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5. 각 분과별 제안 사항에 대한 종합조정

6. 농업농촌 분야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대행

7.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농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인, 행정위원장 1인 및 각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고, 행정위원장은 업무소관 부지사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당연직위원은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이 된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제15조 제2항 1호 내지 5호의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림축산국장, 농업기술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위원장을  
도지사와  
민간위원  
으로  
공동위원장  
조정

위원의  
범위 한정

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농업인 단체 및 주요 품목별 생산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

3. 소비자단체 대표 및 전문 경영인

4. 농업·농촌 관련분야의 전문가

5.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삭 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

2. 농어업과 관련된 품목별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의 임원 및 선도 농어업인

3. 농업·어업·지역개발·복지 분야 전문가

4.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5.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농어촌 및 식품산업관련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소속 상임위원회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삭 제>

<p>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⑥ (생략)</p>	<p>&lt;삭제&gt;</p> <p>③ (현행 제6항과 같음)</p>	
<p>&lt;신설&gt;</p>	<p>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 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p>	<p>위원회 의 임기조항 별도 신설</p>
<p>&lt;신설&gt;</p>	<p>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 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위원장의 직무 조항 별도 신설</p>
<p>제16조(위원회의 운영) &lt;신설&gt;</p>	<p>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위원장의 운영사항 조정</p>

①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의 개발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이에 관련된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으며 이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된다.

④ · ⑤ (생략)

제17조(분과위원회 등 구성·운영)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 상정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분야 각종 심의·심사위원회 구성 시 그 기능을 고려하여 운영

② 위원회-----

-----  
-----  
-----  
-----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삭제>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분과위원회 등 구성·운영)

① -----  
-----  
-----  
-----  
-----분과위원회

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호선에 의해 정한다.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사항조정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별로 팀을 둘 수 있다.

< 신 설 >

제18조 (생략)

제19조 (생략)

③ 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21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 2. 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사유
<p>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u>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③ <u>위원장은 농림축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④ <u>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우리밀 육성업무 담당국장,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위촉한다.</u></p> <p>1. <u>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u>                  2. <u>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u>                  3. <u>밀가공·유통업 관계자</u>                  4. <u>우리밀 생산자 단체대표 등</u></p> <p>⑤ <u>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장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농정위원회가 대행한다.</u></p>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p>위원회 개정사항 반영</p> <p>중복내용 삭제</p> <p>중복내용 삭제</p> <p>중복내용 삭제</p>

### 3.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사유
<p>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p> <p>⑤ <u>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⑥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의 남은 임기로 한다.</u></p> <p>⑦ (생 략)</p> <p>제13조(회의) ① <u>회의는 정기회의 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u></p> <p>② <u>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 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u></p> <p>③ (생 략)</p>	<p>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 산한다.</u></p> <p>&lt;삭 제&gt;</p> <p>⑥ (현행 제7항과 같음)</p> <p>제13조(회의) ① <u>회의는 동 조례 의 목적과 관련한 사항이 필요 할 경우 개최한다.</u></p> <p>&lt;삭 제&gt;</p> <p>② (현행 제3항과 같음)</p>	<p>위원회 비 상설화 개 정</p> <p>위원회 비 상 설 화 에 따른 삭제</p> <p>위원회 비 상설화 개 정</p> <p>위원회 비 상 설 화 에 따른 삭제</p>



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한다. 다만, 보임된 위촉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5.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사유
<p>제14조(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략)</p> <p>④ <u>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 과장과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한다.</u></p> <p>1. (생략)</p> <p>2. (생략)</p> <p>3. <u>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의 장</u></p> <p>4. <u>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축산관련 팀장</u></p> <p>5. <u>시·군 가축방역업무 소관 과장</u></p>	<p>제14조(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담당과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시·군 가축방역업무 소관 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의 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도본부장,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축산관련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u></p> <p>1. (현행 제2호와 같음)</p> <p>2. (현행 제1호와 같음)</p>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p>비상설화 정비에 따른 조문 정비</p>

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  
도 본부장

7. (생 략)

⑤ (생 략)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  
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 략)

제19조의2(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  
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  
남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  
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  
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9조의3(협의회 회의) ① · ②  
(생 략)

<삭 제>

3. (현행 제7호와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회의) ① -----  
----- 단,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  
의회 설치 등) ① -----  
-----  
-----  
-----  
----- 비상설로 둔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심의회 위원장 및  
심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하며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여야 한다.

제19조의3(협의회 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회의 소집  
관련 보완

비상설화  
정비에  
따른 조문  
정비

<p><u>&lt;신 설&gt;</u></p> <p>제19조의4(협의회 운영 등) 그 밖 에 협의회 위원장·위원의 위 촉,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 4조제2항부터 <u>제5항까지</u>, 제15 조, 제16조 및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u>심의회</u>” 는 “<u>협의회</u>” 로 본다.</p>	<p><u>③ 심의의결 후 협의회는 자동 해산한다.</u></p> <p>제19조의4(협의회 운영 등) ----- ----- ----- <u>제5항까지</u>----- -----. -----.</p>	<p>비상설화 정비에 따른 조문 정비</p> <p>비상설화 정비에 따른 조문 정비</p>
--	--	---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수산업법」 및 「어촌·어항법」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농어업인 단체”란 충청남도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2. “우수 농어업인”이란 농어촌 발전에 공이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충청남도 포상 조례」 등에 따라 선정된 농어업인을 말한다.”로 한다.
3.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4.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① 도는 농어업 육성·발전과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는 세계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는 농어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도는 농어업·농어촌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 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및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의 육성
4.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해소, 균형개발 및 경관자원 보전
5. 농어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6. 농어업인단체 및 우수 농어업인 육성지원

## 제2장 분야별 책무와 지원대상

제5조(도의 책무) ① 도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어촌 지역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는 관할 시·군이 농어업 진흥 및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농어업인의 책무) 도내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소비자의 책무) 도내 소비자는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도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쌀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사업
2.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
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

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기반조성 등의 지원 사업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

5.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 사업

6. 수산자원 보전과 어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의 생계지원 사업

7.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이 낮아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8. 어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어업경영 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사업

9. 그 밖에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도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 사업

2.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수·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3. 농수산물의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지원 사업

4. 농수산물의 가공·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 사업

5. 미래의 농어업 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사업

6. 농어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7. 농수산물의 유통 및 물류개선 사업

8. 소규모바다 목장화,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

9. 농기계임대 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0.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11. 농어업용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사용 비용의 지원 사업

12.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

- 13.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항·항만 등 기반시설 사업
- 14. 깨끗한 바다 가꾸기 등 해양환경개선 사업
- 15. 우수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국외연수 및 3농정책대학·포럼·연구모임 등 교육에 관한 사업
- 16. 그 밖에 농어업인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어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1. 농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
-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 3. 농어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 4.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6. 양식어업인 등이 부담하는 양식재해 보험료
- 7.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 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도는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 2. 농어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 사업
- 3. 농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 4.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 사업
- 5.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농산어촌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업
  8. 농어촌 어메니티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축제 활성화 사업
  9.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확충 사업
  10.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개선 사업<개정 2013.09.25.>
  11. 그 밖에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도지사는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어업을 적극 육성,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제9조(지원신청)** ① 농어업인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 단위 농어업인 단체 등 사업의 성격상 도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관할권역내 농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비·도비 예산신청 절차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농어업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 결정)** 농어업인 또는 시장·군수가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수산업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에 설치된 충청남도농어업·농어촌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충청남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 교부)** ① 도지사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해당 농어업인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

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농어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보조사업 목적과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사후관리)** ①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장 3농정책위원회

제13조(설치)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가 소득안정, 농어촌 지역 개발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등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 및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조정·심의한다.

1. 지역농정과 관련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및 자문
2.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충청남도 3농정책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조정
3. 농수산분야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에 대한 자문·조정·심의결정, 농수산분야 벤처농업 육성예산 운영, 3농정책운영위원회 구성
4. 지역 농특산물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지원 등 자문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자문 및 조정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인, 행정위원장 1인 및 각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고, 행정위원장은 업무소관 부지사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당연직위원은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
2. 농어업과 관련된 품목별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의 임원 및 선도 농어업인

3. 농업·어업·지역개발·복지 분야 전문가
4.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5.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농어촌 및 식품산업관련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도의회의 원인 위원의 임기는 소속 상임위원회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농업정책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의 개발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요안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이에 관련된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으며 이해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등 구성·운영)**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 상정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 각종 심의·심사위원회 구성 시 그 기능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별로 팀을 둘 수 있다.

**제18조(실비보상 등)**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운영위원, 팀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특별 안건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밀의 생산과 안전한 가공, 유통 및 소비를 권장하는 등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식량 자립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밀”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한다.
2. “우리밀산업”이란 도에서 우리밀을 재배하거나 우리밀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도에서 주소를 두고 우리밀을 재배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우리밀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리밀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사업자 간의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우리밀을 생산하고 이를 안전하게 가공·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우리밀산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리밀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우리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우리밀의 품종개발과 종자 보급
4. 우리밀과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

5. 우리밀산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6.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협력체계 구축
7.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8. 그 밖에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리밀 생산, 농기계 보급, 배수로 개선 등 생산기반 조성
2. 우리밀의 저장·가공시설 지원
3. 우리밀의 공공기관, 학교 등의 단체급식 지원 등 유통·소비 기반 조성
4.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등 연구
5. 사업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 우리밀은 일반관행 재배되는 우리밀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소비의 촉진)** 도지사는 도민과 공공기관·학교·기업 등의 단체급식과 음식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우리밀의 사용 또는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우리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우리밀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림축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우리밀 육성업무 담당국장,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밀가공·유통업 관계자

4. 우리밀 생산자 단체대표 등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2. 제6조에 따른 사업

3. 사업자 육성

4. 우리밀산업 관련 예산지원

5. 우리밀산업 관련 소비촉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소득보장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격변동성이 큰 주요 농산물의 최소소득 안정망 구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생산자 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라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가·나목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계통출하”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역농협 등을 통해 출하·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 “주 출하기”란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품목별 성출하기를 말한다.
6. “주요 농산물”이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생산되는 농작물을 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대상 주요 농산물은 제10조의 충청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7. “기준가격”이란 전국 주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최근 5년 평균 도매가격에서 최고·최저년도 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을 말한다.

8. “시장가격”이란 당해 년도 재배품목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 주출하기 ‘상품(上品) ‘기준 평균가격으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가격을 말한다.

9. “차액”이란 ‘시장가격 ‘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하는 경우 그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등 농업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 수립 시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의 소득안정과 생산비절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책무)** ① 농업인은 재배포장에 대한 제초, 병해충 방제 등에 관리를 다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 단체는 농업인이 계통출하한 농산물을 조직화·규모화하고, 전문화 하는 등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은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시·군 통합마켓 전문조직, 지역농협 등을 통한 계통출하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이하 “가격안정 사업”이라 한다)

2.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사업

3. 농산물 생산기술, 공동출하,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사업

4. 농산물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지원범위)**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가격안정 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기준은 제10조의 충청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② 다른 사업에 따라 농산물 가격차액 및 농업수입을 보전 받은 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가격안정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에 대한 계통출하 및 농업관련 법인체 출하상황 등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회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원대상 품목 결정 등 농산물 가격안정제 전반의 각종 현안 및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원대상 농산물, 지원면적, 지원기준 등
2. 그 밖에 농산물 가격안정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치는 사항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림축산국장과 업무관련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농업인 단체 관계자
3. 농업생산자 단체 관계자
4.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소속 관계자
5.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소속 관계자
6. 그 밖에 농업·유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농림축산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관련 소관 팀장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이상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7.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8.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신청 접수 및 조사 등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친환경농업 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군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시·군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실천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책무)** 도내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도내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도 및 시·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① 도지사는 국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따라 매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농약, 비료, 항생·항균제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 강화방안
9. 실천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10.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7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① 실천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림축산국장, 농업기술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품질관리담당과장,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 부분부장이 된다.

1. 친환경농업인 대표
2. 소비자 대표
3. 친환경농업 관련학과 대학교수

#### 4. 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임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
4. 친환경농업대상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5.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방안과 시책
6.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농업환경 부하경감)** 도지사는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축산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와 폐영농자재 투기방지 등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의3(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도지사, 시장·군수, 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농자재, 시설 설치자금,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민간인증기관 육성)** 도지사는 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다.

**제13조(소비촉진)**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1.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 지원

2.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 요청

**제13조의2(소비자 체험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등 유아, 초·중·고등학교 학생, 그 밖의 단체급식소 급식관계자들의 친환경농업 체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체험업무를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대량 소비처 공급 및 지원)** ① 도지사, 시장·군수, 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도내는 물론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남도립대학교의 학생,충청남도 지방의료원의 입원환자,그 밖의 단체급식 등 대량 소비처에 대한 소비 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친환경농업 평가)** ① 도지사는 매 연도말 기준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환경농업 실천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2. 시·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추진 열의도
3. 풋거름작물재배(푸른들가꾸기)사업 실적
4.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 유기질비료 공급실적
5.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실적
6. 축산분뇨 처리실태 등

**제16조(친환경농업대상 시상)**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거둔 시·군과 생산자 및 단체 등 유공자를 발굴, 시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3.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재난”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5. “재난관리”란 제4호의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축산관계시설”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3.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
7.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8.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9.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10.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제4조(가축의 소유자 등의 책무)** ① 가축의 소유자나 가축사육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외부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와 그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충청남도의 가축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열화사업자(「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를 말한다)는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사료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농가에 대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또는 그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축산관계시설의 소유자 및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에 참여한 자
2.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한 자
3. 기타 가축전염병 예방에 기여한 농가 등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5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른 재난 관리, 응급지원, 손실보상,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보상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한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4. 가축방역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군수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사육이 제한된 농가에 대한 지원 및 보상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기준)**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피해농가에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의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 등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 가축의 매몰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기관별 살처분 가축 매몰비용 등의 소요재원 부담 비율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피해 가축소유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한 축산농가, 사료판매

업체, 도축장 등에 대하여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가축방역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가축방역 활동이 우수한 단체·법인 또는 개인
2.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초로 신고한 자(가축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제외한다)
3. 가축방역 활동이 우수한 시·군
4. 가축방역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유공 공무원 포상의 종류, 선정절차 등은 「충청남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포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조치사항)** ① 도지사는 축산농가 피해 보상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의 조속한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살처분 가축의 매물로 인한 침출수 방지대책과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관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권고사항)**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기준을 마련하여 도내 축산농가 등에게 이를 직접 권고하거나 시장·군수에게 권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기준을 마련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축산농가의 소독설비 설치
2. 신규 가축입식시(매물농가 포함) 사전에 깨끗한 환경조성 후 입식
3.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 두수
4. 외국인 고용시 방역교육 이수자 고용

5. 외부인 축사 출입 차단시설 설치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2조(가축방역심의위원회)** 도지사 소속으로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심의회는 가축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대책

5.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 과장과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한다.

1. 수의·축산·의료·환경분야 등 전문가

2. 가축생산자 단체 도지부(지회·협의회를 포함 한다)의 장

3.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의 장
  4.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축산 관련 팀장
  5. 시·군 가축방역업무 소관 과장
  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도 본부장
  7.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는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최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참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제19조(운영규정)** 심의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2(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사전협의
3. 가축전염병 피해의 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9조의3(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19조의4(협의회 운영 등)**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위원의 위촉,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협의회”로 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22-98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6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  
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  
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충청남도지사**

1. 법규명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도 소속 위원회 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농림축산국 소속 위원회  
중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개정사항이  
필요하거나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운영실적

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 정비(안 제1조)
- 충청남도 우리밀육성위원회 정비(안 제2조)
-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심의위원회 정비(안 제3조)
- 충청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 정비(안 제4조)
-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정비(안 제5조)
- 충청남도 가축방역심의회, 충청남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정비(안 제6조)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 1. 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농업정책과
  - 전화 : 041-635-4012

○ 제출방법 및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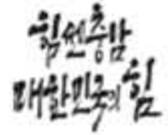
- 서면, 전화, 인터넷(충청남도 누리집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담당자(041-635-40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지역사랑의 첫 걸음은 '내 고향, 내 직장 주소 갖기'부터 시작입니다.



# 충청남도



수신 농업정책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2A충남082)

1. 충청남도 농업정책과-13168(2022. 12. 1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불입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불입 검토의견 통보서 (2022A충남082) 1부. 끝.

## 여성가족정책 **홍은아**

주무관	오세라	여성정책팀장	박일순	여성가족정책	2022. 12. 26.
협조자				관	홍은아
시행	여성가족정책관-22664	(2022. 12. 26.)	접수	농업정책과-13637	(2022. 12. 26.)
우	3226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여성가족정책관실	/ <a href="http://www.chungnam.go.kr">http://www.chungnam.go.kr</a>		
전화번호	041-635-4982	팩스번호	041-635-3034	/ <a href="mailto:cerah5456@korea.kr">cerah5456@korea.kr</a>	/ 부분공개(5)

청원이란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082

정책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농업정책과

담당자명

윤우숙

전화번호

041-635-401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2월 1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농업정책과)

업무담당자가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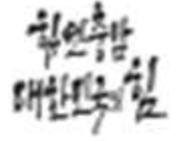
○○○○○○○○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오세라/041-635-4962)

농업정책과장 귀하



#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수신 충청남도지사(농업정책과장)  
(경유)

제목 「위원회 결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보영향평가 검토결과 회신

1. 농업정책과-13157(2022. 12. 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원회 결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부보영향평가 결과를 「부보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 합니다.
  - 가. 규정명 : 「위원회 결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나. 평가결과 : 원안동의
    - 1) 개정배경 : 위원회 결비와 관련, 기종이 유사·중복되거나 안전 처리 등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 기존 운영 중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포자 개정
    - 2) 검토결과 : 부보 유해요인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부보영향평가 결과, 1부.

충청남도감사위원회위원장



주무관 김정연      시군감사팀장      대우 2022. 12. 19.      감사위원장      권영  
이한규

발표자  
시행 충청남도감사위원회 (2022. 12. 19.)      접수 농업정책과-13525 (2022. 12. 20.)  
-19074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송남대로 21 / http://www.chungnam.net

전화번호 041-835-5420      팩스번호 041-835-3061 / wd@nt2600@korea.kr / 대국민 공개

정말이랑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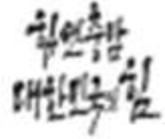
##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권수	간부 합리 수의 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영향 없음
	제규적 제의 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영향 없음
	특가 폐생 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영향 없음
권제	재규구객 제의 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영향 없음
	위대투책 제의 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관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영향 없음
	재가 부수 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부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부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영향 없음
권정	접용 건의 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영향 없음
	예개 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영향 없음
	예가 축 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영향 없음
부패	이해충돌 가 방 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영향 없음
	부패방지 장 치 계 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하지 여부	부패영향 없음
	소극행정 발 상 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영향 없음

지역사랑의 첫 걸음은 '내 고장, 내 걱정' 주는 것이'부터 시작입니다.



# 충 청 남 도



수신 영입정책과장  
(경유)

제목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제출(위원회 결의)을 위한 충청남도 영어업·영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 영입정책과-13158(2022.12.15.)호와 관련됩니다.
2. 「위원회 결의」를 위한 충청남도 영어업·영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 대한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검토의견(위원회 결의)을 위한 충청남도 영어업·영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교육법무담당관

주무관	보강훈	법무담당관	윤선민	교육법무담당관	이종 2022. 12. 15.
합포자				공	김병성
시행	교육법무담당관-15011	(2022. 12. 15.)	접수	영입정책과-13202	(2022. 12. 16.)
우	32255	충청남도 행정관 청사 21, 충청남도청 교육법무 담당관			/ <a href="http://www.chungnam.go.kr">http://www.chungnam.go.kr</a>
전화번호	041-535-3228	팩스번호	041-535-3038	/ <a href="mailto:ikddms@korea.kr">ikddms@korea.kr</a>	/ 대한민국 공개

충청이랑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허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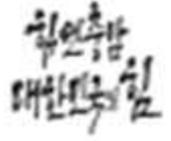
2022. 12. 15.

자지법규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농업정책과-13156(2022.12.15.)호			
개정 이유	○ 도 소관 위원회 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농림축산국 소속 위원회를 정비하고 근거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조정: 2건]</li> <li>- (3농정책위원회) 충청남도 농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 및 운영 등 조정(안 제21조)</li> <li>- (가축방역심의회) 심의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조정(안 제17조)</li> <li>○ [통합: 1건]</li> <li>- (우리집육성위원회) 근거 조례에 대해 위원회 운영 근거 신설(안 제9조)</li> <li>○ [비상설화: 4건]</li> <li>- (인산공동상표심의위원회,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세 심의위원회,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근거 신설</li> </ul>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용 실현 ...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li> <li>○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 영업 등과 관련한 자위(부작위) 의무 부과,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li> <li>○ 위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등폐합 및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li> <li>○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지움에 해당사항 없음</li> </ul>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김병성(☎1140), 법제개혁팀장 유신민(☎3213), 담당자 조강은(☎3226)			

지역사랑의 첫 걸음은 '내 걱정, 내 걱정 주소 갖기'부터 시작입니다.



# 충 청 남 도



수신 영입정책부장  
(경유)

제목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비공주제서 검토 의뢰 회신

1. 영입정책과-13215(2022.12.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검토 결과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비공 주제 비대상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받.

예 산 탐 구 관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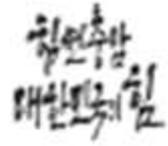
주무관	이은희	예산총괄팀장	연기	예산담당관	연호	2022. 12. 16.
합의자						주이현
시행	예산담당관-15814	(2022. 12. 16.)		경수	영입정책과-13524	(2022. 12. 20.)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송곡4로 21 홍성5층, 송곡도청 예 산담당관				/ http://www.chungnam.go.kr
전화번호	041-855-3151	팩스번호	041-855-3056	/ orot22@korea.kr		/ 대한민국 공개

정말이런 또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지역사랑의 첫 걸음은 '내 고향, 내 직장 주소 찾기'부터 시작입니다.



# 충 청 남 도



수신 농업정책과장  
(경유)

제목 인권영향평가 결과 알림(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 충청남도 농업정책과-13158(2022. 12. 15.)호와 관련됩니다.
  2. 귀 부서에서 검토요청 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불임과 같이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3.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부서의견서를 2022. 12. 30. 까지 최신바라며, 불수용건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에 안건 상정 후 결과를 재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 불임
1. [결과통보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2. [부서의견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 치 행 정 과 장

서명생략

인권보호관 **안성대**      인권센터장 **류가**      자치행정과장 **전복** 2022. 12. 27.  
 김광익

발표자 인권보호관 **오영희**      인권보호관 **출장**

시행 자치행정과-18928      (2022. 12. 27.)      접수 농업정책과-13899      (2022. 12. 27.)

부 32255      충청남도 행정관 **홍복환**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인권센터 / <http://www.chungnam.go.kr>

전화번호 041-835-2338      팩스번호 041-835-3048 / [imsangda1@korea.kr](mailto:imsangda1@korea.kr) / 대한민국 공개

정통이한 더 정확함 충남을 만드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⑥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입안주무부서	농업정책과	결과 통보일	2022. 12. 27.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p><b>제7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제2항</b>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b>[권고내용] 단서 추가 권고</b></p> <p>제7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제2항에 단서 추가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p>		
	<p><b>&lt;개선권고 사유&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성별에 대한 구체적 비율 명시 필요</li> <li>-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li> <li>-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li> <li>-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li> </ul>		

	<p>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임</li> <li>-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원고함</li> </ul> <p>※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사례가 있을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여외 근거 추가 가능</p>
--	--

작성자	부서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안성대	2339